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가. 출산이 집중된 20~30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군내 젊은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을 개선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다.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 또는 신설함(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행 :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 개정 : 아이를 출산한 자
 -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출산장려 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엽산제 지원 신설 : 5개월분(안 제5조제3호)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4호)
 - 현행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개정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라.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우리군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관련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 마.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및 업무관장 부서 신설(안 제20조제9호)
 -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바.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 또는 신설함

-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 별지 제4호서식(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띄어쓰기

- 정의는 → 뜻은 / ~(이)라 함은 → ~(이)란 / 매→장 / 인 → 명 / ~의거 →~따라
- 만V(5)60세, 각V호, 셋째V이상, 되어V있고, 군V외, 범위V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한부모가족지원법」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 2008년도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계획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 반영(245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9. ~ 10.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아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3호 및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을”로, “만60세”를 “만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엽산제 : 5개월분

4.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산제는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전출시”를 “전출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셋째이상”을 “셋째 이상”으로, “되어있고”를 “되어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만5세”를 각각 “만 5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셋째이상”을 “셋째 이상”으로, “되어있고”를 “되어 있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외”를 “군 외”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 중 “매”를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출생순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	-------------------------

별지 제2호서식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지원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	--------------------------------------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 함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p> <p>3. “협약업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p> <p>7. “귀농세대”라 함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뜻은 -----.</p> <p>1. ----- ----- 아이----- -----.</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 ----- -----.</p> <p>3. “협약업체”란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2명-----.</p> <p>7. “귀농세대”란 ----- 주민등록을 ----- 만 60세 -----.</p>

현행	개정안
<p>8. (생략) <신설></p> <p>9. (생략)</p>	<p>8. (현행과 같음)</p> <p>9.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생략)</p> <p>1. ~ 2. (생략) <신설></p> <p>3.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p> <p>4. (생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엽산제 : 5개월분</u></p> <p>4.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 및 제2호</u>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단서 신설></p> <p>② <u>제5조제3호 및 제4호</u>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 하여도 가능)</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 ----- ----- ----- ----- ----- ----- ----- ----- -----</p> <p>.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u> ----- ----- ----- ----- ----- -----</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방법) (생략)</p> <p>1. ~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4. (생략)</p>	<p>제7조(지원방법)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엽산제는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u></p> <p>② <u>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u></p> <p>1. ~ 3. (생략)</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u></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생략)</p> <p>③ 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u>전출시</u>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u>해약환급금</u>은 거창군수입으로 귀속된다.</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전출시</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u>셋째이상</u> 자녀 중 <u>만5세</u>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u>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u>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u>만5세</u>까지 지급한다. 다만, <u>만5세</u>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 까지만 지급한다.</p> <p>③ <u>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만4세 셋째아 보육료</u> 지원대상자에게는 <u>중복지원 할 수 없다.</u></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 ----- <u>셋째 이상</u> ----- <u>만 5세</u> ----- ----- ----- ----- <u>되어 있고</u> -----.</p> <p>② ----- ----- <u>만 5세</u>----- <u>만 5세</u> ----- -----.</p> <p>③ <삭 제></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u>고등학교 학자금</u> 지원대상은 <u>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u>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u>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u>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u>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u> <u>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u>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p> <p>② ~ ③ (생략)</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 ----- <u>셋째 이상</u> ----- ----- ----- <u>되어 있고</u> ----- ----- <u>군 외</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u>군수는</u>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u>거창군홈페이지</u>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 ----- <u>각 호</u>----- ----- ----- -----.</p>

현 행	개 정 안
<p>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u>범위내</u>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p> <p>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u>범위내</u>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p> <p>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u>범위내</u>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p> <p>4. (생 략)</p> <p>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u>매</u>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p> <p>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u>범위내</u>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 (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p> <p>7. (생 략)</p> <p>8. 전입세대에 대한 5<u>매</u>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p> <p><u><신 설></u></p> <p>9. (생 략)</p>	<p>1. ----- <u>범위 내</u> -----</p> <p>2. ----- <u>범위 내</u> -----</p> <p>3. ----- <u>범위 내</u> -----</p> <p>4. (현행과 같음)</p> <p>5. -----<u>장</u> ---- -----</p> <p>6. ----- <u>범위 내</u> -----</p> <p>7. (현행과 같음)</p> <p>8. ----- <u>장</u> ----- -----</p> <p>9. <u>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p> <p>① (생 략)</p> <p>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④ ~ ⑧ (생 략)</p>	<p>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명</u> -----</p> <p>③ ----- <u>명</u>, ----- <u>명</u>, ---- <u>명</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table border="1" data-bbox="188 555 767 645"> <tr> <td>출생순위</td> <td>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p>	출생순위	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table border="1" data-bbox="826 555 1406 645"> <tr> <td>출생순위</td> <td>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p>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출생순위	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188 1451 767 1541"> <tr> <td>지원종별</td> <td>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826 1451 1406 1541"> <tr> <td>지원종별</td> <td>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신 설></p>	<p>[별지 제4호서식]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별첨)</p>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

(접수번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보호자)성명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주소 (전화번호)	☎ HP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 · 면 장 확 인

20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